

중대재해처벌법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K-Risk의 역할



최성규 K-RISK 제도정책연구위원회장
(사)한국건설관리연구원 분쟁지원팀 팀장, 법학박사
koreaclf@daum.net

1.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능(機能)과 가정(假定)

올해 초인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하여 보호법익을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하 ‘책임자’로 통칭한다)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동법의 가정(假定)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할 경우 위반자를 처벌하면, 중대재해가 예방되고,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래 이러한 가정은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럴 듯하다. 중대재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처벌하면(규제적 기능), 책임자는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관련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더 강화하여 준수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고(법익을 보호하는 기능), 중대재해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줄이는(예방적 기능) 선순환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선순환은 기대와 예상대로 잘 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 절차를 적용해 보았다.

2. ‘중대재해처벌법’과 리스크 관리

다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순기능(順機能)을 위한 방안으로 리스크 관리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리스크 관리와 절차에서 필요한 주요 요소가 있다. 우선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위해서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리스크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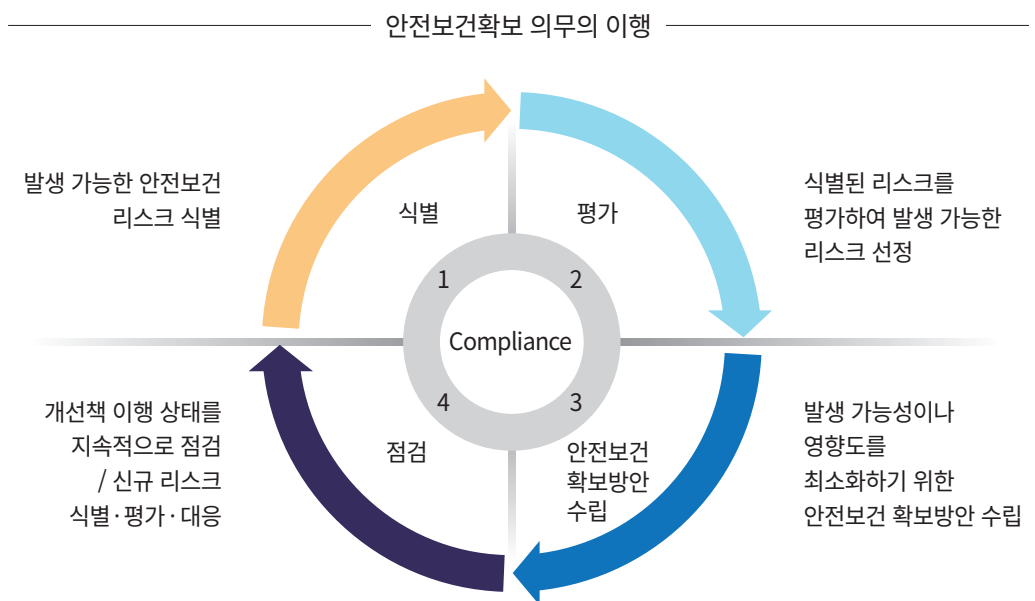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음으로 리스크 식별에 대하여, 동법에서는 중대재해를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를 일종의 ‘리스크’로 볼 수 있겠다.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되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가 된다.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는 중대재해가 되므로 책임자를 처벌하면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발생가능한 안전보건 리스크를 식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정성적·정량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해야 한다. 식별된 리스크가 사업에 미치는 발생확률과 임팩트를 평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리스크 대응 계획(안전보건 확보방안)을 세우는데, 여기서 중대재해는 위협 리스크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위협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대응 계획(안전보건 확보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위협리스크 전가(책임자 처벌)를 통해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점검(모니터링, 컨트롤)한다. 리스크 식별 및 평가와 대응은 발생한 리스크의 점검(모니터링, 컨트롤)을 통해서 계속 보완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한다. 리스크 관리 계획과 식별 및 분석은 발생한 리스크의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통해서 계속 보완 강화될 것이다. 이상의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의무 확보의무의 이행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출처 : 정유철(법무법인 울촌) 외, 2021.4.27. 한국토목학회 중대재해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방안 발표자료 28면]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후 파생될 파급효과에 비해서 4장 16조항에 걸친 매우 간략히 규정된 법이다. 그렇다고 명확한 원칙을 소개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책임자가 어느 수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조치를 하여야 중대재해 처벌로부터 면책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 확보를 위한 이행조치 여부와 이를 위해서 외부점검제도가 강화 및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대재해처벌법’과 K-Risk의 역할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자가 점검은 책임자 스스로에게 있다. 그러나 책임자 내부에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매뉴얼이 없거나 점검 담당자가 없어서 그 동안 중대재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자의 기본적인 자가점검은 1차 조치로 하되, 외부에서 시민과 종사자를 대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2차로 점검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필자는 그 역할과 책임을 ‘K-Risk’에 기대한다.

‘K-Risk’는 한국리스크전문가협회로서 “본 협의회는 리스크전문가 및 관심자들 간의 정보 교류를 바탕으로 각 산업 및 연구분야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이하 RM이라 함) 문화의 정착과 촉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사회로의 긍정적인 환원을 목적으로 한다”(회칙 제1조). 이를 위해서 ‘K-Risk’는 7가지 주요활동으로 ①RM정보 교류를 위한 국내외 각종 포럼, 세미나 추진, ②RM관련 국내외 기관들의 행사(세미나, 컨퍼런스 등) 참여 및 지원, ③RM관련 국내외 기관의 회원, 위원회 참여, ④RM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교육, 출판 등) 추진, ⑤RM을 활용한 R&D 및 용역의 수행 및 자문, ⑥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활동(체육 및 워크숍 등) 참여, ⑦기타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해왔다(회칙 제3조).

그리고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앞으로 제정될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법(예를 들어, 건설안전특별법)을 위해서 ‘K-Risk’가 회원들의 정보교류와 연구를 넘어서, 리스크 전문가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역할을 시작할 때이다. 필자는 크게 2가지로 그 역할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한 자격증을 소유하여 직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미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에 대한 점검자 혹은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이다. 이는 K-Risk는 물론 해당 개인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동법에서 책임자가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해당 규정은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자격과 역할의 기준과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정에도 공청회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에 참여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자격, 역할, 책임이 모호하게 정하여 지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

둘째는 모든 회원이 관련한 자격증을 가지고 점검자 또는 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역할과 역량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를 위한 ‘K-Risk 모델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체크리스트’를 공동 연구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필자는 리스크 관리야 말로 ‘탁상공론(卓上空論)’이 아닌 ‘실사구시(實事求是)’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K-Risk’가 본 협의회 회칙의 목적에 맞는 리스크 관리 문화의 정착과 촉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로의 긍정적인 환원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중대재해 책임자들이 느낄 위험(危險, 위협리스크)은 K-Risk가 내일(미래)을 바꿀 기회(機會)이다.”